

의안번호	제 553 호
의결 연월일	. . . (제 회)

충청북도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발의자	이상식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0년 10월 5일

충청북도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상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53
----------	-----

발의연월일 : 2020년 10월 5일
발 의 자 : 이상식, 연종석, 송미애
윤남진, 이상정, 허창원
김기창 의원

1. 제안이유

-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국방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기업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국방산업의 육성 및 국방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국방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국방산업육성 추진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안 제4조)
- 국방산업 육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국방산업계획의 수립·시행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20명 내외로 국방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함(안 제7조)

3. 조례안전문 :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붙임
- 조례안예고 : 2020. 9. 15 . ~ 2020. 9. 25. (10일간)
- 관련부서 협의 : 신성장산업국 산업육성과와 협의함
- 비용추계 : 붙임

충청북도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국방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기업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방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 가.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민·군기술 협력사업과 관련된 사업
 - 나. 「방위사업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방위산업
 - 다. 방위산업물자 또는 방위산업기술과 관련된 산업
2. “국방 중소·벤처기업”이란 국방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방산업의 육성 및 국방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국방산업육성 추진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제5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해서 매년 국방산업육성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련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국방산업 육성사업) ① 도지사는 국방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방 중소·벤처기업 육성 사업
2. 국방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
3. 국방산업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
4. 국방산업 국내외 시장 개척 사업
5. 산·학·연·관·군 기술개발 협력체계 구축 사업
6. 국방클러스터 조성 사업
7. 그 밖에 국방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정부 또는 충청북도가 출자·출연한 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6. 그 밖에 도지사가 국방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

제6조(국방산업 육성 지원) 도지사는 국방산업 육성을 위하여 국방산업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관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1.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2. 국방 중소·벤처기업의 신기술·핵심기술·부품 개발 등 연구개발 및 지원
3. 국내외 국방산업시장 진출 지원

4. 산·학·연·관·군 협력 사업 및 지원 사업
5. 국방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국방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국방산업발전협의회 설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국방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국방산업육성계획의 수립·시행
2. 국방 중소·벤처기업 육성
3. 국방산업 육성사업의 위탁 및 지원
4. 국방클러스터 조성사업
5. 그 밖에 국방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2. 국방 관련학과 교수, 국방관련 중소·벤처기업 임원
3. 육군, 해군, 공군 등 군 관련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국방관련 학회, 협회, 연구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국방산업 관련 전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방산업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9조(포상) 도지사는 국방산업발전과 관련하여 국방과학기술의 연구개발, 일자리 창출, 지역산업 활성화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3조(민·군기술협력사업) ① 정부는 민과 군의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민·군기술개발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민과 군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재, 부품, 공정 및 소프트웨어 등의 기술개발사업

나.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진하는 기술개발사업 중 민과 군의 협력을 통하여 상호간 가장 우수한 기술능력을 활용하여 성과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기술개발사업

다. 무기체계 등의 개발사업: 「방위사업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무기체계 등 민과 군이 공통으로 활용 가능한 체계와 그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

라.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민과 군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위사업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비무기체계를 개발하는 사업

2. 민·군기술이전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민·군기술적용연구사업: 민과 군이 보유하는 기술을 상호 이전하여 실용화 가능성을 연구하는 사업

나. 민·군기술실용화연계사업: 민과 군의 협력 기술개발을 통하여 확보한 기술을 군사적 시범이나 민간의 수요검증을 거쳐 실용화하는 사업

3. 민·군규격표준화사업: 민수규격과 국방규격의 표준화 사업

4. 민·군기술정보교류사업: 민과 군의 연구개발 성과, 전문기술인력, 연구개발 장비·시설 및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등이 포함된 기술정보의 교류를 촉진하는 사업

□ 방위사업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8. "방위산업"이라 함은 방위산업물자를 제조·수리·가공·조립·시험·정비·재생·개량 또는 개조(이하 "생산"이라 한다)하거나 연구개발하는 업을 말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

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①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이하 이 목에서 "투자금액의 합계"라 한다) 및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5) 삭제 <2020. 2. 11.>

(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

(7)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관

(8)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나. 기업(「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만을 말한다)의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다만,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에 관한 기준은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다음 각각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창업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3)의 요건만 적용한다]

(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이 보증(보증가능금액의 결정을 포함한다)을 하거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개발기술의 사업화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무담보로 자금을 대출(대출가능금액의 결정을 포함한다)할 것

(2) (1)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과 그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기업의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3) (1)의 보증 또는 대출기관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을 것

② 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3)에 따른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 용 추 계 서

1. 사업개요

-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컨설팅, 기술개발(R&D), 판로개척 등 산업 전주기를 방위산업과 연결하여 코로나-19 경제위기 파고극복 지원과 이를 토대로 충북경제 4% 실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비용발생 요인

- 충청북도 국방산업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6조의 지원 사업비

3. 관련 조문

- 안 제6조(육성지원사업) 제1호~6호
 1.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2. 국방 중소·벤처기업의 신기술·핵심기술·부품 개발 등 연구개발 및 지원
 3. 국내외 국방산업시장 진출 지원
 4. 산·학·연·관·군 협력 사업 및 지원 사업
 5. 국방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국방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비용 추계결과

가. 재정수반요인 : 충북 국방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업비

나.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1년~2025년까지 5년간으로 함

다. 추 계 결 과 : 2021년부터 향후 5년간 연 400,000천원 소요

※ 산출 기초

- 우수기술 보유업체 기술개발(R&D) 지원(40,000천원 X 5업체 = 200,000천원)
- 협약기업 홍보 및 컨설팅 지원(6,000천원 X 20업체 = 120,000천원)
- 국방벤처센터 매니저 인건비(40,000천원 X 2인 = 80,000천원)

라. 재원조달방안 : 도비

5. 작성자 : 신성장산업국 산업육성과장 이용일

6.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 입						
세 출	400,000	400,000	400,000	400,000	400,000	2,000,000
충북국방벤처 센터 지원	400,000	400,000	400,000	400,000	400,000	2,000,000
재원 조달	400,000	400,000	400,000	400,000	400,000	2,00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400,000	400,000	400,000	400,000	2,000,000
	지방세	400,000	400,000	400,000	400,000	2,000,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구·군비						
기 타						